

경운대학교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부속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소재) 생활관은 우리대학교 및 대학이 지정하는 곳에 둘 수 있다.
- 제3조(총괄)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 제4조(개관기간) 생활관의 하계 및 동계방학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생활관의 시설이용은 입주학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관장은 입주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학생활동) 질서 있고 명량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 함양을 위한 학생의 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제7조(관원수칙) 관장은 입주학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학생생활관수칙에 따라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8조(조직) 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생활관장 1명과 약간명의 사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업무) ① “삭제”
 - ② 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입주학생을 지도 감독하며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사감은 시설관리와 입주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을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생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 명의의 위원을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관 관장이 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생활관 관원 수칙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생활관비 책정에 대한 사항
5. 기타 생활관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주관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생활관 학생자치회

제14조(생활관 학생자치회) ① 생활관의 자율적인 학생관리를 위하여 자치회를 두어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

② 자치회는 각동장, 층장 및 1학년 대표로 구성한다.

③ 자치회는 관장의 명을 받아 사감의 지도에 따라 운영된다.

④ 자치회장을 제외한 자치위원은 관장이 임명하되, 자치회장은 관장이 자치회원의 투표 또는 직권으로 임명 할 수 있다. 다만, 투표로 임명 할 경우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5장 입주 및 퇴관

제15조(입주학생 선발) 생활관에 입주코자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

시스템 또는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생활관 신청메뉴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정의 선발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주학생을 선발한다.

제16조(입실결격 사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 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수칙에 의하여 벌점 퇴관처분을 받은 자
3. 법정 전염병 이환자 및 보균자 와 결핵유무확인서 미제출자
4. 휴학 중 이거나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는자
5. 직전학기 벌점 10점 이상인 자
6. 기타 생활관장이 단체 생활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관생선발 기준) 생활관 입주학생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항에 해당한 자는 우선 선발한다.
 - 가. 직전학기 동·층장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자 및 현재 학기 동·층장으로 선발된 자
 - 나. 신체장애가 있어 외부생활이 곤란한 자
 - 다. 기초 생활수급자
 - 라. 국가유공자 및 자녀
2. 상점우수자
3. 대구·구미지역 이외 거주자로서 벌점없고 성적이 우수한 자(수용인원 미달 시 대구·구미 거주자 포함)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자

제18조(입주절차) 생활관의 입주학생으로 선발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입주 기일 내에 입주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9조(퇴관절차) ① 생활관의 임의로 퇴관하고자 하는 학생은 생활관 퇴관1일전에 해당 동·층장에게 공동비품 및 청소에 대한 확인 점검을 받고 환불신청서작성 및 열쇠, 식권카드를 반납 후 퇴관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학생에 대하여는 관장이 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학칙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비를 기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
4. 법정 전염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5.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15점이상 처분을 받은 자
6. 기타 생활관 입주학생으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

③ 생활관 지도위원회의 구성은 관장, 사감, 직원, 생활관 학생자치위원회 회장과 담당 자치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입주 시 제출서류) 생활관에 신규 입주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지정 기일 내에 생활관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약서(소정양식) 1부
2. 결핵유무확인서 1부(입주 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검진받은 확인서)

제21조(상·벌) ① 관장은 생활관 입주학생이 출선하여 봉사하거나 선행을 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추천받아 상점을 주어 생활관 재배정시 우선권을 부여함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관장, 사감이 벌점을 부과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벌점부과 내용은 생활관 수칙에 따라 정한다.

③ 벌점을 부여 받은 자는 직후 학기 선발 및 배정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6장 재 정

제23조(경비부담) 생활관 시설의 사용에 따른 제반 경비는 입주학생이 부담한다.

제24조(생활관비) ① 생활관 입주 시 생활관비는 관리비, 열쇠보증금, 자치회비로 구분한다.

② 생활관 개관 이후 중도 입주자는 아래와 같이 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구분	관리비	자치회비	열쇠보증금
4주 이내 입주	100%	100%	100%
8주 이내 입주	75%	75%	100%
8주 이후 입주	50%	50%	100%

③ 생활관 입주학생의 식비는 입주 후 식사 여부를 선택하여 생활관 식당 또는 학교식당에서 자율적으로 구입 할 수 있다. 중도 퇴관시에는 생활관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다.

④ 생활관 퇴관학생에게는 아래 기준에 따라 관비를 환불할 수 있다.

퇴관구분	관리비	식비(잔여식권)
1주 이내	90%	100%
1주 이후 4주 이내	75%	90%
4주 이후 8주 이내	50%	70%
8주 이후 12주 이내	25%	50%
12주 이후	없음	

제25조(생활관비의 납부기일) 납부기일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비 : 매 학기 납부
2. 자치회비, 열쇠보증금: 매 학기 납부

제26조(생활관비의 용도) 관리비는 생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27조(예산과 결산) 본 대학교의 예산 및 결산 방식에 따른다.

-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제28조(글로벌관 및 게스트룸) 글로벌관 및 게스트룸은 학생생활관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사용대 상자 및 사용료는 관장이 따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